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 - 24
----------	---------

제출년월일 : 2014. 3.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의 일관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폭을 상향 조정(안 별표 1)
- 나.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의 기준을 추가(안 별표 2)
- 다. 굴착된 토사를 즉시 반출하고 모래로 되메우기 하도록 한 규정에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3)
- 라.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하도록 한 규정에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별표 3)
- 마. 보도공사 정밀시공 및 시민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 보도정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조례에 명문화(안 별표 3)
-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76조(원인자부담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4. 2. 3. ~ 2. 23 (제출의견 :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관련조문	평가기준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해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준수부담의 적정성	마포구, 동작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차 검토를 권고함.	반영 여부 : 미반영 - 굴착행위로 인접부분 도로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4조제3항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결과 : 제외법령

4) 2014년 제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4.3.6)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복구공사”라 함은”을 ““도로복구공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직접손케부분”이라 함은”을 ““직접손케부분”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간접손케부분”이라 함은”을 ““간접손케부분”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을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직접손케 부분”을 “직접손케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에 의하고”를 “별표 1”로, “별표 2에 의하며”를 “별표 2”로, “별표 3에 의하고”를 “별표 3과 같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전단 중 “납부기한 내에 이를”을 “납부기간 내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법」 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를 “도로굴착으로”로, “도로 복구공사”를 “도로복구공사”로 하고,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추가징수할 수 있다”를 “추가징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굴착행위로 인한”을 “굴착행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실시공으로 인하여”를 “부실시공으로”로,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보도란의 “블록 및 타일류”를 “블록 및 화강석류”로 하고, 구분란 중 최소굴착면적란 및 최소굴착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차도의 간접손케영향구간란 중 “굴착시”를 “굴착 시”로, “미사용시”를 “미사용 시”로 하고, 차도의 간접 복구비용란 중 “표층시공비”를 각각 “표층 시공비”로 한다.

최소굴착면적	1.2m×1.2m	1.2m×1.2m	1.2m×1.2m
최소굴착폭	1.2m	1.2m	1.2m

같은 호 비고 ① 중 “보도외”를 “보도 외”로, “간접복구용”을 “간접복구비용”으로 하고, 제3호나목 중 “타일류”를 “화강석류”로 하며, 제4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2 보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보도란 다음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 용 범 위
보 도	일반보도블록	일반보도블록 표층 : 6cm	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 동행의 유무에 따라 보소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모래 : 4cm	
	보조기층 : 10cm		
	소형고압블록	소형고압블록 표층 : 6cm	
		모래 : 4cm	
보조기층 : 10cm			
화 강 석	표층 : 3~5cm		
	물탈 (1:3) : 4cm		
	콘크리트기초 : 10cm		
투수성아스콘	보조기층 : 10cm		
	투수성아스콘 표층 : 4cm		
	기층 : 10cm		
모래 : 5cm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보 도 횡 단 차 량 출 입 시 설	블 록 포 장	보도블록 표층 : 8cm	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cm)대신 불임모르티(4cm) 적용
		모래 : 3cm	
		콘크리트기초 : 10cm	
		보조기층 : 15cm	
아스팔트포장	표층(아스콘) : 5cm	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기층(콘크리트) : 15cm		
콘크리트포장	표층(콘크리트) : 15cm	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 (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기층(골재) : 15cm		
기 타	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중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손괴 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6.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괴 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u>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복구공사”</u>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케부분 또는 간접손케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u>“직접손케부분”</u>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u>“간접손케부분”</u>이라 함은 직접손케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케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복구공사”</u>란----- ----- -----. 2. <u>“직접손케부분”</u>이란----- -----. 3. <u>“간접손케부분”</u>이란----- ----- -----.
<p>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u>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u></p>	<p>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 ----- <u>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u>----- -----</p>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매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에 의하고,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

직접손케부분-----

③ -----

별표 1-----
----- 별표 2-----

별표 3과 같으며-----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2. (생략)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생략)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천재지변-----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납부
기간 내에-----

----- 「지방세기
본법」 제91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생략)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케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3. (생략)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케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비용

-----.

1. (현행과 같음)

2. 도로굴착으로

-----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
-----.

3. (현행과 같음)

② -----

----- 드는 -----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③ ----- 굴착행위에 따른 --

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
----- 부실시공으로 -----

----- 징
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 시행에

-----.

[별표]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u>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u></p> <p>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케영향구간 및 복구비용</p>				<p>[별표 1] <u>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u></p> <p>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케영향구간 및 복구비용</p>			
		차 도		보 도			
구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블록 및 타일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구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u>0.7m×0.7m</u>	<u>0.8m×0.8m</u>	<u>0.7m×0.7m</u>	최소굴착면적	<u>1.2m×1.2m</u>	<u>1.2m×1.2m</u>	<u>1.2m×1.2m</u>
최소굴착폭	<u>0.7m</u>	<u>0.8m</u>	<u>0.7m</u>	최소굴착폭	<u>1.2m</u>	<u>1.2m</u>	<u>1.2m</u>
간접손케영향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시 ----- •-----m 사용시 	(생략)	(생략)	간접손케영향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시 -- •-----m 사용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복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층시공비 •----- 표층시공비 	(생략)	(생략)	복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층시공비 •----- 표층시공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p>비고 : ① 보도외 -----</p> <p>----- 간접복구용 -----.</p> <p>② (생략)</p> <p>3. 굴착폭(B), 간접손케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p> <p>가. (생략)</p> <p>나. 간접복구단면</p> <p>(1) (생략)</p> <p>(2) 보도</p>				<p>비고 : ① 보도 외 -----</p> <p>----- 간접복구비용 -----.</p> <p>② (현행과 같음)</p> <p>3. -----</p> <p>-----</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1) (현행과 같음)</p> <p>(2) ----</p>			

- ① (생 략)
- ② 타일류
- ③ (생 략)

4. -----
 --- 당해연도 -----
 ----- 아니 한다. -----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별	부호	적 용 단 면	적용범위
보도	일반 보도 블록	(생 략)	(생 략)
	소형 보도 블록	소형고압블록 표층: 7cm 모 래: 4cm 보 조 기 층: 10cm	
	오나 멘트 타일	오나멘트타일 표층: 4.5cm 모 래 (1:3): 3cm 콘크리트기초: 5cm 보 조 기 층: 10cm	
	투수 성아 스콘	(생 략)	
	기타	(생 략)	

<신 설>

- ① (현행과 같음)
- ② 화강석류
- ③ (현행과 같음)

4. -----
 --- 해당연도 -----
 ----- 아니 한다. -----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제3조제3항 관련)

종별	부호	적 용 단 면	적용범위
보도	일반 보도 블록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형 고압 블록	소형고압블록 표층: 6cm 모 래: 4cm 보 조 기 층: 10cm	
	화강 석	표 층: 3~5cm 모 래 (1:3): 4cm 콘크리트기초: 10cm 보 조 기 층: 10cm	
	투수 성아 스콘	(현행과 같음)	
	기타	(현행과 같음)	

종별	부호	적용단면	적용범위
	블록 포장	보도블록표층:8cm	단. 기울기가 1/10
		모래: 3cm	이상 구간은 모래(3
		콘크리트기초:10cm	cm)대신 붙임모르터
		보조기층 : 15cm	(4cm)적용
보도 횡단 차량 출입 시설	아스 팔트 포장	표층(아스콘):5cm	기층은 와이어매쉬
		기층(콘크리트):15cm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콘크 리트 포장	표층(콘크리트):15cm	기층과 표층 사이
		기층(골재):15cm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기타	기존 보도 횡단 차량 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생략)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커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제3조제3항 관련)

1. : (현행과 같음)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굴착 및 복구공사” 참고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

로 한다.

4. ~ 5. (생략)

6.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손괴 발생시 굴착 원인이자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4. ~ 5. (현행과 같음)

6.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괴 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